

예 산 총 칙

제1조(총칙) 2012년도 의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제2조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11,900전

나. 연 간 생 산 량 : 4,900천m³

다. 1일 평균 생산량 : 13.4천m³

라. 주요건설개량사업 : 구제역관련안사면쌍호지구지방상수도공급사업 18.9억원

제3조(수익적 수입 및 지출)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<u>수</u> <u>입</u>	<u>지</u> <u>출</u>
제1관 상수도사업 수익 4,737,103천원	제1관 상수도사업 비용 4,949,515천원
제1항 영업 수익 2,062,363천원	제1항 영업 비용 4,924,749천원
제2항 영업외 수익 2,674,740천원	제2항 영업외 비용 4,270천원
	제3항 예비비 20,496천원

제4조(자본적 수입 및 지출)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<u>수</u> <u>입</u>	<u>지</u> <u>출</u>
제1관 자본적 수익 19,605,860천원	제1관 자본적 지출 19,605,860천원
제1항 자본잉여금수입 19,605,860천원	제1항 가동설비자산 19,481,100천원
	제2항 고정부채상환금 70,000천원
	제3항 예비비 54,760천원

제 5 조(계속비) 해당사항 없음

제6조(채무부담행위) 해당사항 없음

제7조(지방채) 해당사항 없음

제8조(일시차입금의 한도액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0천원으로 정한다.

제9조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다른 과목의 경비에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1,051,787천원

(2) 부채상환원리금 : 70,000천원

제10조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7,900,000천원이다.

제11조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해당사항 없음

제12조(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) 해당사항 없음

제13조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0천원으로 정한다.